

대구지방법원 2022. 10. 19 선고 2022나31069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항소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구

담당변호사 이원창

피고, 피항소인 1. A

2. B

3. C

4.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반석

담당변호사 조이황, 임재화, 박예신

변 론 종 결 2022. 9. 21.

판 결 선 고 2022. 10. 19.

제1 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2. 4. 20. 선고 2019가단119111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2. 피고 A은 원고에게 17,190,667원 및 그 중 16,582,915원에 대하여 2019. 4. 30.부터 2019. 6. 26.까지는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과 피고 C 사이에 2018. 3. 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C은 피고 A에게 창원지방법원 합천등기소 2018. 4. 3. 접수 제4813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별지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과 피고 D 사이에 2018. 3. 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D은 피고 A에게 창원지방법원 합천등기소 2018. 3. 12. 접수 제3499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5.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6. 원고와 피고 A, C, D 사이의 소송 총비용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7.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문 제2, 3, 4항과 같은 판결.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과 피고 B 사이에 2017. 1. 18. 체결된 증여계약을 17,190,667원 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 B은 원고에게 17,190,66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기재할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① 나. 1)항 제2행의 ‘(이후 2019. 1. 11.까지로 연장되었다)’ 부분을 ‘(아래 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출금 채무의 변제기가 매년 연장됨에 따라, 보증기간도 매년 연장되어 최종적으로 2019. 1.

11.까지로 연장되었다)’로 수정함.

② 나. 3)항 제2행 이하의 ‘변제기 2021. 1. 17.로 정하여 대출받았는데’ 부분을 ‘변제기 2014. 1. 17.로 정하여(그 후 대출금 채무의 변제기가 매년 연장되어 최종적으로 2019. 1. 11.로 연장되었다)

대출받았는데’로 수정함.

③ 다. 1)항을 아래와 같이 고침.

1) 피고 A은 이 사건 대출채무의 변제기인 2019. 1. 11.까지 이 사건 대출원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G은행은 2019. 1. 24. 원고에게 피고 A의 원금연체를 이유로 한 신용보증부실통지를 하였다.

④ 라. 1)항을 아래와 같이 고침.

1) 피고 A은 ① 피고 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하고(이하 ‘이 사건 제1증여계약’이라 한다), 2018. 1. 23.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 18.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② 피고 C에게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하고(이하 ‘이 사건 제2증여계약’이라 한다), 2018. 4. 3.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3. 9.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③ 피고 D에게 별지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하고(이하 ‘이 사건 제3증여계약’이라 한다), 2018. 3. 12.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3. 9.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⑤ 라. 2)항 다음에 아래와 같이 3)항을 추가함.

3) 위와 같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피고 A이 소유하는 부동산은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T빌라 K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만 남게 되었다.

2.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이 사건 대출채무의 변제기한인 2019. 1. 11.까지 이 사건 대출원금을 변제하지 아니함으로써 보증기간 2019. 1. 11. 내에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A이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연체한 날은 2019. 1. 12.이고 이는 보증기간 2019. 1. 11.이 경과한 후의 날이어서 보증기간 내에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4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G은행이 원고에게 신용보증부실통지를 할 때 부실사유인 신용보증사고의 발생일자를 '2019. 1. 12.'로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대출 금융기관이 원고의 신용보증을 받는 주된 목적은 변제기에 대출금이 변제되지 아니하는 경우 원고로부터 보증금을 받기 위함이고, 원고가 보증기간을 변제기와 같은 날로 약정하는 것은 변제기에 대출금이 변제되지 아니하면 당연히 보증기간 내에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만약 변제기에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는데도 변제기(보증기간 말일) 다음 날에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면, 금융기관이 변제기와 보증기간 말일을 같은 날로 한 신용보증을 받고서는 대출을 해줄 리가 없다. 이 사건에서 G은행이 신용보증사고 발생일자를 '2019. 1. 12.'로 기재한 것도 보증기간이 끝나는 2019. 1. 11. 24:00에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따라서 피고 A은 원고에게 17,190,667원(= 대위변제금 16,582,915원 + 법적조치비용 517,862원 + 위약금 89,890원) 및 그중 대위변제금 16,582,915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9. 4. 30.부터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분 최종송달일인 2019. 6. 26.까지는 약정이율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하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사해행위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과 피고 A의 사해의사

1)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A은 이 사건 대출을 받은 후 이자만 납부하고 대출원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년 그 변제기와 보증기간을 연장 받아왔는데, 2018. 1. 12. 변제기와 보증기간을 2019. 1. 11.로 연장 받았고,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차례로 나머지 피고들 앞으로 이전하였으며, 그 후에도 대출원금 변제 없이 이자만 변제하다가 더 이상 변제기와 보증기간 연장을 신청하지 않고 2019. 1. 11.을 넘겨버려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고, 그로써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사전구상채권이 발생하고 나아가 원고의 대위변제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사후구상채권이 발생하였다. 이는 사실상 G은행의 대출금채권이 보증금액 범위 내에서 원고의 사후구상채권으로 전환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2) 한편, 이 사건 제1증여계약과 관련하여 등기원인이 '2017. 1. 18. 증여'로 되어 있고, 그 증여일자는 변제기와 보증기간이 최종적으로 연장된 2018. 1. 12.보다 약 1년 전의 일자이다.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언제 있었는가는 실제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날을 표준으로 판정할 것이되, 이를 판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처분문서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를 중심으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73138, 73145 판결,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등기원인의 일자는 얼마든지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이를 소급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다른 사정을 고려하여 실제 등기원인이 있었던 일자를 등기부 기재와 달리 인정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73138, 73145 판결,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1206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 A이 H조합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 사건 빌라만 남기고 나머지 모든 부동산을 형제들에게 증여할만한 합리적 이유를 확인할 수 없는 점, 피고들이 처음(2019. 6. 26. 답변서)에 '정상적으로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여를 내세우지 않았는데, 이는 피고 A이 채무면탈을 위하여 증여하였음을 시사하는 점, A이 2017. 11. 6. 남대구세무서의 압류체납처분을 받는 등 그 무렵 사업경영에 어려움이 생겨 채무면탈을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처분할 생각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A이 최종적으로 변제기 연장이 있는 2018. 1. 12. 후 얼마 되지 않아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전하고 이어서 이 사건 제2, 3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실제로는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비슷한 시기에 체결되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제1증여계약만 이 사건 제2, 3증여계약과 달리 최종 변제기 연장 전에 체결했어야 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제1증여계약이 실제로 이루어진 때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2018. 1. 23.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3) 위에서 본 바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체결될 당시 당시에 이미 원고의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 성립할 수 있는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되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4) 그리고 피고 A은 채무면탈의 의사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나. 피고 A의 무자력 및 사해행위 여부

1)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체결된 무렵 피고 A이 소유한 적극재산의 내역과 가액(원)은 아래 표와 같다(제1심 시가감정결과).

부동산	가액	수증자	수증가액
L	10,414,000	B	66,146,200
M	10,439,700		
N	24,024,000		
O	21,268,500		
P	19,000,000	C	22,946,800
Q	3,946,800		
S	8,661,600	D	23,723,600
R	15,062,000		
이 사건 빌라	145,000,000		
합계	257,816,600		112,816,600

2) 피고 A이 이 사건 제1증여계약이 체결된 2018. 1. 23. 당시와 이 사건 제2, 3증여계약이 체결된 2018. 3. 9. 당시에 부담한 소극재산의 내역과 금액(원)은 아래와 같다.

채권자	원고 주장금액	피고 주장금액	이 법원의 판단		
			2018. 1. 23.	2018. 3. 9.	비고
원고	17,190,667	17,190,667	0	0	아래 G은행의 채권과 중복되어 소극재산 합산에서 제외함.
대부업권	2,771,000	2,771,000	2771000	2,771,000	다툼 없음
H조합	36,909,000	0	0	0	2021.4.15. 금융거래정보 2019.8.26. 신용정보조회 (2018.1.22. 변제)
	86,000,000	86,000,000	86000000	86,000,000	다툼 없음
G은행	20,000,000	0	20,000,000	20,000,000	2020.6.15. 금융거래정보 (원고 신용보증 대출금)
U카드	3,510,963	0	3,510,963	3,510,963	2000.6.17. 금융거래정보
V캐피탈	5,915,000	5,915,000	5,915,000	5,915,000	다툼 없음
W캐피탈 (X)	35,256,404	24,745,000	35,256,404	33,818,000	2021.7.6. 금융거래정보 2019.8.26. 신용정보조회
남대구세무서	10,920,090	10,920,090	10,920,090	10,920,090	다툼 없음
건강보험공단	2,368,760	2,368,760	2,368,760	2,368,760	다툼 없음
Y	22,000,000	0	0	22,000,000	갑 제8호증의 2
합계	242,841,884	149,910,517	166,742,217	187,303,813	

3)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적극재산이 191,670,400원(= 257,816,600원- 66,146,200원)으로 감소되었지만 여전히 소극재산 166,742,217원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제1증여계약은 사해행위가 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 사건 제2, 3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적극재산은 가액 145,000,000원인 이 사건 빌라만 남게 되어 소극재산 187,392,850원에 미달한다. 피고 A은 이 사건 제2, 3증여계약으로 인하여 무자력 상태에 빠졌으므로 이 사건 제2, 3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1)

다.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C, D은 이 사건 제2, 3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1) 이 사건 제1증여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이 사건 제2, 3증여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해야 하고, 그 취소에 따르는 원상회복으로 피고 C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D은 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청구는 각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재판장 판사 박치봉, 판사 서영애, 판사 김형태

별지1

목 록

1. 경남 합천군 L 답 635㎡
2. 경남 합천군 M 답 1,173㎡
3. 경남 합천군 N 답 1,540㎡
4. 경남 합천군 O 답 1,289㎡. 끝.

별지2

목 록

1. 경남 합천군 P 답 1,250㎡
2. 경남 합천군 Q 임야 1,012㎡. 끝.

목 록

1. 경남 합천군 R 전 1,772㎡
2. 경남 합천군 S 전 1,203㎡. 끝.

1) 원고와 피고들은 피고 A 소유의 중고 굴삭기 1대를 적극재산으로 주장하지 않았고 그 가액을 주장·입증하지도 않았다. 위 굴삭기에는 2017. 6. 7. X(주)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2400만 원)이 설정되어 있다. 이 사건 제2, 3증여계약 후 위 굴삭기 가액이 채권최고액 2400만 원에 이른다고 본다하더라도, 적극재산이 169,000,000원(145,000,000원+24,000,000원)에 그쳐 소극재산 187,303,813원에 미달한다.